

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이정상 민원봉사과장)

가. 제안사유

2002. 12. 31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·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(2003. 3. 26부터 시행)에 의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.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지정 (안 제2조)
나.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(안 제3조, 제4조)
다.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(안 제5조)
라.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(안 제6조)

3. 관련법령

- 인감증명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2002. 12. 31자로 공포된(대통령령제17867) 개정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등 가입의무조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,
- 본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각구군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표준안을 작성 각구군에 시달된 내용인바
- 주요사항은 보험가입금액과 변상책임에 관한것으로
 - 제3조 2항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잡은 것은 일부 타구(9개구청)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입금액이 대체로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와 보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,
 - 제5조의 담당공무원 변상책임 한계와 보험금 청구사유와 관련하여
 -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 승소할경우에 가능하므로 그런 경우 보험청구는 문제가 없으나
 -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해당되므로 법원의 판경에 따라 변상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대체로 보험약관에서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제야 할것으로 판단되며
 - 1항 전반부에 있는 “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될 때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”란 ②항에서 규정하는 가입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
-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5조①항에서 규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보험금이 1억원을 초과 할 때로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기타조항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시 보험금을 청구할수 없는 조항이 있을시 본 조례가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것임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 요지 : 생 략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